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대표전화: 055-262-4275 / 팩 스: 0303-0262-4275
이 메 일: greencw21@hanmail.net / 홈페이지: www.greencw21.or.kr
주　 소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창원시청 본관 지하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 일시 : 2023. 4. 12(수) 16:00

□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2764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순서

1. 성원보고	5
2. 참석위원 인사 및 기념촬영	5
3. 운영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6
4. 전 회의록 보고	7
5. 안건토의	11
-제1호 의안.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공유	12
-제2호 의안. 2023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방향성 제언	40
-제3호 의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57
6. 기타 안건 토의	72
7. 폐 회	

[참고사항]

참고1. 협의회 2023년 사업 추진계획	42
참고2. 협의회 2월~3월 추진 활동보고	46
참고3. 협의회 4월~12월 추진 활동계획안	51
참고.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	86
참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95
참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04
참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119

□ 제7기 운영위원회 [총18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회 장		이 학 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	
공동의장		조 명 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공동의장		전 영 호	마산회원구 양덕2동체육회 회장	
공동의장		안 병 석	세무법인 태영 대표세무사	
교육분과	위원장	정 은 희	경남대학교 LINC 3.0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장	
	간 사	강 준 자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사무국장	
기업경제 분과	위원장	문 미 경	창원대학교 LINC3.0사업단 공유협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간 사	이 대 학	해성디에스(주) 안전환경팀 팀장	
기후에너지 분과	위원장	유 현 석	창원YMCA 사무총장	
	간 사	황 준 필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마산지회장	
사회여성분과	위원장	경 철 수	(사)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경남이사장	
	간 사	장 명 원	새암어린이집 원장	
생태환경 분과	위원장	이 덕 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간 사	윤 석 연	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학 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	
	간 사	전 영 호	마산회원구 양덕2동체육회 회장	
회 계 감 사		이 상 준	한울회계법인 경남본부 대표공인회계사	
사 업 감 사		안 명 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당연직		박 진 열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 국장	
당연직		박 선 희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과장	

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말한다.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

1. 성원보고 및 개회

□ 총원 18명 중 ___명이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위원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참석위원 인사 및 기념촬영

3. 운영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2020.6.30.>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4. 전 회의록 보고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 19.(목) 16:00
- ❍ 장 소 : 창원시청 본관 2층 시민홀
- ❍ 참 석 : 총 20명의 위원 중 14명 참석
- ❍ 참 관 : 이선항 환경정책팀장, 김영미 주무관
-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서영옥 팀장, 성지수 간사, 윤재영 간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회 장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공동의장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
공동의장		김인순	전,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
공동의장		김영남	㈜무학 상무	○
교육분과	위원장	정은희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임
	간사	최종선	모두의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기업경제분과	위원장	문미경	창원대학교LINC+사업단 지역협업센터장	○
	간사	김민영	창원시여성회관진해관 관장	위임
기후에너지분과	위원장	최윤식	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이노 대표	○
	간사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위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장	승해경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간사	박정문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무차장	위임
생태환경분과	위원장	옥삼복	한국폴리텍Ⅶ대학 스마트환경시스템과 교수	위임
	간사	박경숙	녹색커튼시민참여단 강사	위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
	간사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실장	○
감사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경남본부 대표공인회계사	○
감사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당연직		박진열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 국장	○
당연직		박선희	창원특례시 환경정책과 과장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20명의 운영위원 중 14명 참석, 5명 위임함으로 성원이 충족됨을 보고하고,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운영위원장 및 참석위원 인사

○ 김명용 운영위원장,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말씀, 기념촬영에 이어 참석 위원들이 상호 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누다.

3. 보고안건

1) 전차 회의록 보고

○ 김연옥 사무국장이 회의 자료에 근거해 전차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 및 활동을 보고하여 운영위원들의 전원동의로 승인 보고를 받다.

2) 위원회 활동 보고

○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는 각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하고, 불참분과는 김연옥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 이상준 감사가 생태환경분과의 투명유리 조류충돌 조사에 대하여 대부분 관공서 위주에서 창원시 관내의 골프장 등 산 쪽에 위치한 업체들이 충돌사례가 있으니 협의하여 조사를 해보는 것을 제안하고 관공서와 사기업까지 확대 조사를 요청하다.

○ 이찬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50탄소중립보다 2030그린뉴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기업이 많은 창원시의 특성상 기업이 50%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올해 전기 값이 올라가고 국제적인 압박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다. 창원시 기후환경국이 출범하면서 환경교육센터를 통하여 ESG쪽 인력 양성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작년 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가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9월에 있을 예정으로 지속협에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이클레이 생물 다양성 보고에 창원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이클레이 보고서가 2023년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다.

4. 심의 안건

1)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심의의 건

○ 사무국에서 2022년 주요사업인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사업,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사업, 수영 할 수 있는 마산만, 생명이 숨쉬는 진해만 사업, 함께하는 시민장터 길마켓, 지역 협력사업의 주

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

요 추진 결과를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활동을 보고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2년 사업비 및 운영비 회계결산 보고를 하고 운영비 중 인건비 잔액에 대하여 직원의 퇴사와 입사 과정 중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심의에 대해 참석 운영위원들의 심의 의견을 물어 전원동의로 심의 의결하다. (운영위원회 자료집 p169 참고)

2)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2023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무국의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에게 항목별로 설명하고(운영위원회 자료집 p174~188 참고) 위원들에게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전년도 대비 예산안 증액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의 호봉을 올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의결됨을 설명하다.

○ 이찬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추어 블루 카본(바다에 잘 피가 서식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방법) 및 바다 자원을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다. 또한 회의자료 155페이지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와 길마켓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환경국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가 기후시민 인력양성 환경교육임을 강조하다.

○ 안명선 감사가 총회를 앞두고 사업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많은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하다. 사무국이 수고하였고 각 분과 위원들이 현장에서 사무국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다. 제시된 안건들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함을 제안하다.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참석 운영위원들의 심의 의견을 물어 전원동의로 심의의결 받다.

3) 제3호 의안. 사무국 직제와 업무분장 심의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사무국 직제와 업무 분장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2항 사무국

장연임 심의의 건과 제18조 11항 직원의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내용을 설명하다.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김연옥 사무국장 연임의 건과 성지수 팀장 승격으로 2팀장 직제 및 사무국 업무 분장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심의 의견을 물어 전원동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받다.

5. 기타 안건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2023년 안건을 모두 마치고 기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운영위원들에게 요청하다.

○ 이상준 감사가 190페이지의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 현행 조례가 208페이지의 새로 만들어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재조정해서 총회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현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준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3년 4월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자료집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막고자 확정된 후 위원들께 안내드리겠다고 하다.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후 시행하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이 가능하니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또한 민선 8기 시장님 체제를 맞아 지속협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다.

6. 폐회

○ 김명용 운영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회의사진

참고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4호, 2022. 7.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5. 안건토의
- 제1호 의안.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공유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위원회 활동 보고

2023년 제1차 교육분과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9.(수) 16: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회의실2
❍ 참 석 : 총 15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강준자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사무국장	○
2	김정현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3	김은주	경남보육교사교육원 교수	
4	김정화	나라사랑연합회 부회장	
5	김주화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6	김한순	마산대 인성교육과 교수	○
7	배세현	(사)동마산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8	서정욱	창원시새마을문고 회장	○
9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10	윤효자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부회장	○
11	이진희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2	이천수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13	정은희	경남대학교 LINC 3.0 지역사회혁신센터장	○
14	주정철	진해지역경제교육발전포럼 대표	
15	최종선	모두의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김한순 위원이 안명선 위원을 추천하다.
- 안명선 위원이 사업감사를 맡고 있어 위원장 수락이 어렵다고 하다.
- 안명선 위원이 정은희 위원을 추천하다.
- 정은희 위원이 새로 오신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며 고사하다.
- 안명선 위원이 서정욱 위원을 추천하다.
- 서정욱 위원이 학위 준비를 이유로 고사하다.
- 정은희 위원이 다시 위원장 추천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위원들의 추천을 요청하다.
- 윤효자 위원이 강준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다.
- 강준자 위원이 추천 의사를 수락하여 간사로 선출되다.

4. 2023년 교육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정은희 위원장이 2023년 교육분과의 추진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지난 기수에서 추진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청소년 SDGs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의 사례를 들어 참고 설명하다.
- 안명선 위원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마켓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올해에는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의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맞추어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서정욱 위원이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 안명선 위원이 교육 시간은 약 40분~1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다.
- 김한순 위원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과 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정은희 위원장이 그 의견을 사업으로 만든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묻다.
- 김한순 위원이 교육에 참가만 해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특강이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하다.

- 윤효자 위원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대학생 남녀에게 강연을 한다든지 파트너를 찾아 준다든지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 서정욱 위원이 현재 **새마을 문고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축제, 학생 독서 골든벨 등 독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다. 이렇게 새마을 문고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안명선 위원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그런 것도 좋다고 하다.
- 강준자 간사가 김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출산 장려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 특강** 형식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진희 위원이 마산의 수정마을의 경우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니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 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하면 어떠한지 제안하다.**
- 최종선 위원이 교육분과의 과거 활동 내역을 위원들에게 소개한 후 지금까지는 17가지의 목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다. 또한 **교육 기자재나 보드게임 개발 등에 관심이 있어 그런 쪽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하다.**
- 정은희 위원장이 **길마켓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사업이 위원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좋았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정현 위원이 C-ESD 교육이 주로 게임으로만 끝나면 아이들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이 아쉽다고 하며 **좀 더 수업이 체험이나 프로젝트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고등학생에게 적합함을 설명하며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주신다면 좋겠다고 하다.
- 정은희 위원장이 제시된 많은 사업들 중 1년 동안 다 할 수는 없기에 우리

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

분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을 얘기하다. 오늘은 결정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냈으니 다음번에는 올해 사업 250만원범위에서 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또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면 TF팀을 꾸려 굵직한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하다.

5. 기타제안 및 광고

❍ 4월 12일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4월 20일 기후위기 특강 홍보

6. 폐회

❍ 정은희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 주요 의결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정은희(경남대학교 LINC 3.0 지역사회혁신센터장)

❍ **분과 간사** : 강준자(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사무국장)

❍ **제안된 내용** :

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확산
2.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특강 또는 토의
3. 청소년 축제, 학생 독서 골든벨 등 독서 관련 새마을 문고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4.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대상 확대 및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
5. 지속가능발전교육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자재나 보드 게임 제작 논의
6. 길마켓, 교육지원청의 생태시민한마당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홍보 캠페인
7. C-ESD 교육 내용 심화 및 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 프로그램 개발

❍ **차기 회의 일정** :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예정)

□ 회의사진

2023년 제1차 기업경제분과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3.(목) 16:00~17:00

❍ 장 소 :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2동(82호관) 205호

❍ 참 석 : 총 16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2명 위임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김기범	BNK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장	
2	김순애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
3	김영남	㈜무학 상무	○
4	김용진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 회장	
5	김현경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상남도지부 창원시 창원지회장	○
6	도병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창원3사업장 환경안전팀 부장	○
7	문미경	창원대학교LINC3.0사업단 공유협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
8	박봉원	경남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장	
9	박상욱	현대위아(주) 안전환경팀 팀장	○
10	박정원	NH농협은행 창원시청지점장	위임
11	이경호	두산에너빌리티(주) 대외협력팀 상무	
12	이대학	해성디에스(주) 안전환경팀장	○
13	이정화	경남과학사랑어머니회 회장	
14	이홍진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 회장	○
15	최동영	DY테크 대표	위임
16	최희규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메카융합공학과 교수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6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기업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홍진 위원과 도병윤 위원이 문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문미경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여 7기 기업경제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문미경 위원장이 ESG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기업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하며 이대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다.
❍ 이대학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여 7기 기업경제분과 간사로 선출되다.

4. 2023년 기업경제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문미경 위원장이 분과사업 논의를 시작하며 김연옥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이어오던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기업경제분과 사업개요 및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참고사항으로 제6기 기업경제분과 주요하게 추진한 사업을 설명하다.
❍ 문미경 위원장이 기업경제분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천하는 활동을 했다고 말하다. 위원들에게 이런 활동을 더 해봐야 한다든지, 필요한 활동이 있으면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대기업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ESG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ESG 실천방안 설명회' 안내 및 참석을 요청하고, 기업경제분과에서도 ESG 관련된 사업(워크숍, 청년이 바라는 지역 일자리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면 어떨지 제안하다.
❍ 문미경 위원장이 창원시 기후대기과, 창원대학교,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협업해 **실질적으로 ESG가 필요한 20개 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다. 선발 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라고 하며 **기업 추천을 부탁하고, S(사회)와 G(거버넌스) 분야의 컨설팅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동참**하실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다.
❍ 두 번째로 LG그룹 본사 협력업체에서 창원대와 같이 **LG전자의 ESG, CSR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 **지역 5개 대학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속협이 공동주관을

하거나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 박상욱 위원이 차기 회의부터는 **사전에 회의자료나 안건이 공지가 되면 미리 준비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다음부터는 미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다.

5. 기타토의

(5-1) 창원시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 캠페인 참여 요청

- 김연옥 사무국장이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 캠페인 및 환경교육 참여 신청을 요청하고, 기업경제분과 위원님들의 참여 의사를 묻다.
- 기업경제분과 위원들이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 캠페인 참여에 동의하다.
- 김현경 위원이 실생활에서 분리배출을 잘못 알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분리배출 관련 환경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다.
- 문미경 위원장이 작년에는 창원시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 시민들의 동참이나 지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소속된 단체나 기관에 환경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속협에 요청해 달라고 하다.
- 이홍진 위원이 창원시에 78개의 시장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각 시장마다 홍보를 하면 시장상인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다.
- 김순애 위원이 과거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무대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문화 퍼포먼스를 접목해 캠페인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경로당, 복지관 등 고령자 대상 환경교육 필요성을 말하다.

(5-2) 창원시 환경의 날 기념주간 행사 일정 안내

- 김연옥 사무국장이 창원시 환경주간 행사 안내 홍보를 하다.
- 문미경 위원장이 환경의 날 기념식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표창을 줄 수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제안하다.
- 김영남 위원이 환경주간 행사를 보면 개최장소가 창원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며 이를 분산하여 야외에서 진행이 가능한 행사는 해양누리공원도 사람이 많고 행사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다.

(5-3)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특강 안내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님들 대상으로 준비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 특강을 안내하고 참석을 요청**하다.

(5-4) 기타토의

- 김영남 위원이 기업에 가서 견학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괜찮은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것 같다고 하다.

- ❍ 이대학 간사가 회의자료를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지 문의하다. 지속협 행사들이 많은데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다.
- ❍ 김연옥 사무국장이 월별 행사를 정리한 일정표와 링크로 연결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하다.
- ❍ 문미경 위원장이 기업경제분과에서 참여가능한 지속협 사업이 있다면 선별하여 정리해 달라고 하다.

6. 광고

- ❍ 김연옥 사무국장이 4월 7일(금) 또는 12일(수) 운영위원회 일정을 알리며 위원장과 간사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하다.

7. 폐회

- ❍ 문미경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 주요 의결사항

- ❍ **분과위원장**: 문미경 창원대학교LINC3.0사업단 공유협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 ❍ **분과간사** : 이대학 해성디에스(주) 안전환경팀 팀장
- ❍ **제안된 내용**:

1. ESG 컨설팅 관련 수혜 기업 추천
2. 회의 안건지 사전 공유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
3.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 캠페인 참여
4. 위원 특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 참석 요청
5. 분과회의 시 기업 현장 견학 및 당사 회의 진행
6. 지속협 사업 중 기업경제분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선별

□ 회의사진

2023년 제1차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1.(화) 16: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 석 : 총 15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강미정	창원시 현모회 회장	
2	공병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3	장원준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4	박강우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의원	○
5	방예림	까사미아드메종 대표	
6	유제대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팀장	○
7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8	이상욱	경남에너지㈜ 신재생사업팀 팀장	○
9	이용협	마산소방서발전협의회 위원장	○
10	이재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
11	정재희	진해누비다협동조합 사무국장	
12	조광제	㈜광동개발 대표	○
13	조상원	한국폴리텍7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14	차성목	성원E&C㈜ 대표이사	○
15	황준필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마산지회장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3. 제7기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용협 위원이 신규 위원과 기존 위원이 함께 있으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이재덕 위원이 유현석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유현석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고 참석위원 동의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황준필 위원을 분과 간사로 추천하다.
- 황준필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고, 참석위원 동의로 분과간사로 선출되다.

4. 2023년 기후에너지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유현석 위원장이 기후에너지 분과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김연옥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기후에너지 분과 사업개요와 예산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올해 기후 분과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다. 또한 김연옥 사무국장에게 작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작년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창원시 기후환경 정책 관련 워크숍을 분과사업으로 추진함을 설명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사업제안을 돕기 위해 창원시기후환경국의 주요사업으로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 캠페인 참여와 환경의 날 주간 행사 일정과 4월 위원 특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다. 이어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3년 사업 추진계획 일정(회의안건지 p18~p21)에 대하여 설명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기후에너지분과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차기 일정을 확정한 후 폐회를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다고 하다. 사업방식은 토론회, 캠페인, 특강, 또는 정책 제안을 위한 액션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이용협 위원이 신호등 정지선, 거리 등에 ‘기후위기 온도 1.5도’ 문구 등 시각적으로 작은 팻말을 붙여놓은 사례를 들며 우리 시 또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지 물어 사무국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많은 단체에서 한다고 답하다.

- 이용협 위원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다고 말하며 **바람개비 같은 작은 것들을 만들어 글을 쓴 후 몇 km마다 두면 괜찮지 않겠냐는 홍보캠페인을 제안**하다
- 이용협 위원이 경비나 예산 등이 시에서 지원되는지 질문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직접적인 재정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다.
- 이재덕 위원이 **창원시**에서 유사한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분과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 유제대 위원이 **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논의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정책 제안 **공모전을 제안**하다. 2023년 협의회 사업중 SDGs 퀴즈 골든벨이 있는데 모여서 하면 더 뜨겁고 또 보여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이를 교육분과에서 하는지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교육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전체사업으로 잡고 있다고 하다.
- 유제대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인데 에너지 **퀴즈왕 같은 것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예전에 에너지 공단에서 퀴즈 골든벨을 했던 것을 말하며 그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하다. 창원시에 모여서 에너지 골든벨 사업을 우리 분과가 주축이 되어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 유제대 위원이 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때 퀴즈를 풀면 상품도 주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유제대 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하면 너무 클 것 같기도 하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에코라이프페어때 **기후 홍보를 하면서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위원들의 제안들은 확정을 짓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제안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박강우 위원이 6페이지 사업개요 중 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이런 것을 인식해야하는데 아직 인식이 멀었기 때문에 먼저 인식**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하다. 또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 다른 지역을 보면 **자전거를 타면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3만원을 주는 케이스를 얘기하며 그런 것도 기후의 사업**이라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요즘 전기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 되어 누비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타고 있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자전거 길이 안전한지 그런 **자전거 길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재덕 위원이 유럽을 가면 자전거를 많이 타며 그런 곳은 우리처럼 자전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고 하다.
- 유제대 위원이 창원천변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사안을 얘기하며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다. **창원천변에 사람이 다니는 길의 옆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다.
- 이상욱 위원이 최근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이 안 좋게 바뀌었음을 지적하다. 임대료를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도 없으며 공장을 빌려주는 사장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지붕을 빌려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창원시에서 신생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대구와 같이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로 하는 사례를 들다.
- 조광제 위원이 히말라야 산행을 예시로 들어 19년도와 작년의 기후차이가 엄청남을 지적하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지만 산불이 하나 나면 끝나며 건물에 불이 나면 대기가 엉망이 된다고 하다. 그래서 **산 입구 등에 팻말 같은 것을 붙여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동의하며 산행하는 분에게 그런 리본을 하나 드리면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하다.
- 황준필 위원이 공원에도 에너지체험관이 있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홍보 방법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다. 또한 하천변이 가장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든지 바닷가를 이용하여 길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안하다. 그리고 산에 가면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뭔가를 드리는, 쓰레기봉투를 드린다거나 기후에너지를 새긴 그런 가방을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제안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우리 주변의 소영웅들을 찾아서 실제로 영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오늘은 특정 주제를 잡지는 않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다. 다음회의 때는 오늘 나왔던 안건들을 정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5. 기타제안 및 광고

❍ 운영위원회 4월 7일 또는 12일 개최 예정

❍ 기후대기과 중소기업 ESG방안 설명회 3월 29일 개최 예정

6. 폐회

❍ 유현석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유현석(창원YMCA 사무총장)

❍ **분과 간사** : 황준필((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마산지회장)

❍ **제안된 내용** :

1. 바람개비와 같은 작은 구조물을 활용한 기후위기 홍보·캠페인 활동
2. 창원시 취약계층 지원정책 홍보 및 시민인식 교육 등 지원 확대 안내
3. 자전거출퇴근 마일리지제도 정책 마련
4. 창원시 공장지붕 및 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정책 제안 공모전
5. 에코라이프페어와 연계한 에너지 퀴즈 골든벨
6. 자전거 마일리지 및 하천변 자전거길 등에 대한 토론회
7. 기후위기 및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객 대상 홍보와 산 입구에 팻말 설치
8.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재미있는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체험관
9.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 회의사진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참 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2023년 제1차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9.(수) 14: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회의실2

○ 참 석 : 총 15명의 위원 중 10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경철수	(사)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경남이사장	○
2	김나은	서양화가	○
3	김남수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4	류옥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과장	○
5	박은미	공감아틀리에 원장	
6	박순희	자유민주총연맹 경남부회장	○
7	신순미	해피코칭연구소 소장	○
8	오은아	강추한방병원 대외협력 팀장	○
9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	
10	이애라	마산YWCA 사무총장	
11	이인순	창원문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이정아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홍보이사	○
13	장명원	새암 어린이집 원장	○
14	조미숙	문 정신건강의학병원 사무장	○
15	조숙희	마산카톨릭여성회관 봉사회 회원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사회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박순희 위원과 조숙희 위원이 경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경철수 위원이 추천 의사를 수락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자진 추천 의사가 없는지 위원들에게 물어보다.
- 장명원 위원이 자진하여 분과 간사를 지원하다.
- 위원들이 동의하여 장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다.

4. 2023년 사회여성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경철수 위원장이 사업 내용 등 검토를 위해 올해 사업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아웃라인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지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사회여성분과의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SDG 10번은 오늘 토의 내용을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기 위해 다음에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다. SDG 5번과 17번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성평등이라는 말에 논리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하고 제의된 내용 가운데 성평등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다.
  위원회 활동비와 관련하여 250만원 예산인데 올해 우리가 사업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사무국에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사업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므로 사전에 정한 사업은 없으며 분과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 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6기위원들이 참여한 사업(여성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지정 관련)의 추진을 설명한 뒤 분과 평균 회의 개최 수,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 김나은 위원이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 와서 SDG 5번과 17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다.** 우리 분과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4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18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

우리가 성평등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 류옥란 위원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성평등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사무국에서 전국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이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이 어디인지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 관련분과가 있는 협의회가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다고 답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사무국에서 SDG 5번과 10번(17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다.
- 김나은 위원이 경철수 위원장에게 이걸로 논의를 하실 것인지 문의하며 저희가 이 중에서(회의 자료)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회의 자료는 예시이며 사회·복지·여성·문화를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답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사무국에서 SDG 5번과 17번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요청하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조미숙 위원이 분과의 취지와 목적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하다. 이 모임을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마다 특성 차이가 있으며 액션을 취해도 좋고 논의를 해도 좋다고 답하다.
- 조숙희 위원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하고 액션을 취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성교육,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사례를 들며 우리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창원시에 강력히 권고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올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다.**
- 류옥란 위원이 창원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과 관련하여 **창원시에서 3년간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한 창원시가 과에서 했던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예정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전국성평등네트워크 협력 사업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주시길 요청하다.
- 조미숙 위원이 여성이나 남성을 따지는 것은 현재에는 너무 고루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성평등 얘기가 아닌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으면서 범죄 사건을 줄이고 미술 치료나 학교 양호 선생님을 통한 건전한 성교육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 류옥란 위원이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위원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끼리 뭉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른 꼭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오은아 위원이 주요 내용 사항을 봤을 때 **저출생 고령화 문제 역시 사회적,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지 토의**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조숙희 위원이 일단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며 꼭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다.
- 장명원 간사가 위원장님의 말씀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제 생각에는 한번은 이 부분을 다루고 다음 번 회의에는 다른 것을 다루는 등 한 곳을 다루기보다 전부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김나은 위원이 여성분과라서 여성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하는지 문의하며 요즘에 **1인 가구증가와 고독사가 많음을 얘기하여 앞으로 우리가 안 다루어 본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고 하다.
- 류옥란 위원이 우리 분과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던 걸 알고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위원장님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경철수 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는 제가 발표를 하고 이후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5. 기타제안 및 광고

- 4월 12일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4월 20일 기후위기 특강 홍보

6. 폐회

- 경철수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창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경철수 (사)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경남이사장

❍ **분과 간사** : 장명원 새암 어린이집 원장

❍ **제안된 내용** :

1. 경철수 위원장 SDG 5번, 17번 관련 차기 회의시 발표 예정
2. 여성친화도시 관련 창원시의 시행 사업 내용 정리
3. 저출생 고령화 문제 관련 토의 및 아이디어 제안
4. 1인 가구 증가 및 고독사 문제 등 다루어보지 않은 주제에 대한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 6월 20일 이후 날짜로 사무국 투표

□ 회의사진

2023년 제1차 생태환경분과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4.(금) 16:3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 석 :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길인경	(사)동마산청년회의소 회장	○
2	김용화	창원특례시시민협의회 마산회원구위원장	
3	김은주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홍보위원장	○
4	박소연	동영미디어 대표	○
5	박은율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무처장	
6	손영섭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
7	윤석연	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8	이광식	자연보호연맹창원시협의회 회장	○
9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
10	이민영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1	문성용	㈜물환경 대표	
12	최은하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13	한정희	K-ECO 기획부장	○
14	황보경옥	진해구 덕산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문화분과장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4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광식 위원과 황보경옥 위원이 이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이덕자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여 7기 생태환경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윤석연 위원이 자진하여 분과 간사 수행 의사를 표시하다.

❍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윤석연 위원이 7기 생태환경분과 간사로 선출되다.

❍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인사말씀을 하다.

4. 2023년 생태환경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이덕자 위원장이 지속협에서 고민해 온 것들을 설명해주시고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생태환경분과 사업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하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짚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다.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반딧불이 활동(분과 내 예산으로 활동하기 어렵기에 제외한다고 설명), 투명유리조류충돌 조사, 연안환경활동가 양성 등을 설명하고 올해는 먼저 (위원)교육부터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위원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은 SDGs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에 우리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또한 작년에 하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투명유리조류충돌 사업은 와일드 버드 설치가 필요하다면 기관들과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는 다른 곳을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무국에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아직 컨택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분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관련 부서와 연결할 수 있다고 답하다. 또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기관에게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작년에 조사를 한 충돌현황을 사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컨택을 하여 기관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고 하다.** 올해는 실천을 하는 해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조금 더 보태서 두 군데 정도를 더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 한정희 위원이 합포구가 빠져있음을 설명하며, 작년 조사를 바탕으로 되는 곳만 스티커 활동을 해놓으면 홍보가 되니 자기들(기관) 자체 내에서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하천 오염원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해당 조사를 할 거라면 우수기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비가 오면 우수인지 오수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다. 가능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다. 조사를 통해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주택가는 워낙 복잡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많아 불명수의 원인을 시에서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점 중 **시장에서 생선을 자르고 난 오염된 물들이 다 하천으로 간다고 지적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만일 제안을 하신다면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면서 파악을 해본 후 그걸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형태로 가기 위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손영섭 위원이 위원회 기능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오폐수 근거를 체크해서 창원시에 통보하여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생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할 게 많으며 일단 우리가 먼저 교육 받고 각각의 기관 단체에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생태환경시설 탐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사업개요 중 위의 세 가지(정책논의들)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하다. 일단 저희가 새로운 기수가 되었고 창원시의 생태환경 시설이 많이 있으니 예를 들어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어떻게 분리배출이 되는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나부터 먼저 알고 실천하**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경상남도기본전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자는 의미에서 견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창원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응원 캠페인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견학과 관련하여 견학 장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분과위원)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오늘은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리스트로 정리해보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오늘 같은 날 구체적인 제안은 하기 힘들다고 하다. 오늘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생태가 무엇인지 대화 방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4월 위원 특강에 대하여 안내하고 2023년 협의회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 넣으면 힘들 것 같으니 일단 가셔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제안도 해주시며, 기본적으로 지속협이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하다. 올해 상반기는 학습의 시간으로 삼아 2년 중 일 년은 배우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차기회의 일정은 분기별 정도로 약 6월 정도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다.
- 한정희 위원이 5월에 만나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 진행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을 리스트로 잡아야하니 결정하는 자리는 필요한 것 같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사업 개요 중 아래의 세 가지에서 하나를 정해서 의견을 내보자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해양 활동가 교육지원사업(연안환경활동가)은 수산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천 오염 관리나 투명 유리창인 것 같다고 하다. 투명유리창이 현재로서는 더 편할 것 같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사무국에서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5월에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이광식 위원이 분과에서 정하면 따라가겠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오늘 하천 오염 얘기를 나누고 나니 우유팩을 세척하는 것에 고민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말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씻었을 때 생기는 물의 소비, 물의 오염과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했을 때의 이익 등이 얘기가 되면 좋겠으며 이런 것도 숙제인 것 같다고 하다.

- 윤석연 간사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생태환경분야는 생소하지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하다.
- 손영섭 위원이 추진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를 초월하시는 위원장님이 하셔서 잘 되실 것 같고 (윤석연)간사님도 자원을 하셨으니 잘 될 것 같다고 하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거제도의 사례를 들며 우리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다.
- 김대갑(길인경) 위원이 청년회의소의 설립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에 봉사하기 위하여 더 배워서 노력하겠다고 하다.
- 김은주 위원이 생활정치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오늘 회의 내용을 듣다보니 저희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다.
- 박소연 위원이 생태환경이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이광식 위원이 이번 7기가 6기보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이면서 의욕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6기 때보다 관심도 더 가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다.

5. 기타제안 및 광고

- 운영위원회 4월 12일 개최 예정
- 기후대기과 중소기업 ESG방안 설명회 3월 29일 개최 예정
- 시민생물조사단 모집 안내

6. 폐회

- 이덕자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참 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2. 12. 30.]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44호, 2022.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 ·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주요 의결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 **분과 간사** : 윤석연 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제안된 내용** :

1. 투명유리조류충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와일드 버드 설치 등 실천적 활동 수행
2. 관내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난 뒤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대책
3. 재활용 선별장 등 창원시 환경시설 견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위원 교육
4. 5월 중 분과 소회의 개최 예정

□ 회의사진

2023년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0.(월) 16: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 석 : 총 10명의 위원 중 10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비고
1	이학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	○	위원장
2	전영호	마산회원구 양덕2동체육회 회장	○	간사
3	박경훈	창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4	신영규	경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조교수	○	
5	안병석	세무법인 태영 대표세무사	○	
6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경남본부 대표공인회계사	○	
7	이찬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	
8	이창흡	(주)동진생명연구원 대표	○	
14	정재형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15	홍종칠	효창산업 대표	○	

□ 회의록 정리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0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참고 관계 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 사회 · 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 · 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 ·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2. 28.>
2.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창원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12.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2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이학은 협의회 회장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이학은 회장이 추천을 수락하여, 제7기 특별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전원동의로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님과 활동할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전영호 공동의장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추천을 수락하여 제7기 특별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전원동의로 간사로 선출되다.

위원장 : 이학은 위원 (협의회 회장) **간 사 : 전영호 위원 (협의회 공동의장)**

4. 2023년 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 김연옥 사무국장이 회의 안건지를 토대로 정기총회 때 의결된 특별위원회의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분과위원회를 조직하는지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특별한 의견이나 추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다.
❍ 정재형 위원이 국가사업인 마산만특별관리해역 4차기본계획 수립함에 정책평가는 우수에 비해 수질 평가달성이 미비하니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협의회 전체 사업과 연동하면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다.
❍ 이찬원 위원이 마산만에 생물이 많이 돌아왔으며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다른 도시에 모범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후 위기라고 하다. 마산만 쪽과 관련해 블루카본 분야를 시정연구원에서 해수부로 연결하여서, 가능하면 해수부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백데이터가 마련되어 제안을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 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니, 해수부나 국가기관의 예산을 끌어와야 함을 얘기하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참여가 필요한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있을 수 있다하면 무엇인지 문의하다.
- 이상준 위원이 우리 전체 예산을 생각하는 현실성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다. 내용은 좋지만 우리 수준에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 이상준 위원이 연안오염과 관련하여 낚시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낚시 쓰레기로 인해 생물 및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를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다.

1. 마산만의 실질적인 수질개선 방안 정책개발 사업
2. 낚시객 쓰레기 규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 기타토의 및 일정 안내

1) 기후환경국의 환경교육팀

- 환경교육도시 릴레이 응원에 대해 설명하고 일정이 잡히면 참석하기로 하다.
- 박경훈 위원이 환경교육센터 완공 시기를 문의하며 만약 된다면 (환경교육도시 지정 관련)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센터가 미리 있어야 유리하지 않은지 의견을 제시하다.
- 이찬원 위원이 환경교육센터 건물을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며 환경교육도시 지정 준비를 위해 환경교육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내용 이해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기후환경국과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제안과 응원 퍼포먼스 이며, 환경부 사업이고 도로 내려와서 시가 도로 신청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좀 더 전문적으로 관여가 되는 분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시의 해당부서간 우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찬원 위원이 동의하며 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따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우리도 일임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지속협의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으니 딱 좋다고 말하다.

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16조 삭제<2014.12.24.>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 12. 28.>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2020.6.30.>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신영규 위원이 이를 작년에 진행할 때 사무국에서 진행했는지 질문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과에서 주도하였고 지속협은 협력을 했다고 답하며 모든 준비는 창원시에서 했다고 하다.
- 이찬원 위원이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하여 자연적으로 성격상 지속협의회가 가져가야하는 일임을 담당해야하는 성격임을 얘기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특별위원회 대화방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하다. 또한 환경교육도시지정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의견을 과에 전달하겠다고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동의하다.

2) 기후환경국의 환경의 날 주간 행사에 대해 안내하다.

4. 광고 및 폐회

❍ 김연옥 사무국장이 4월 위원 특강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다.
❍ 전영호 공동의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공무원(읍면동), 시의회도 참석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3년 협의회 전체 사업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의 조정 의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것이 있는지 묻고 이후에도 제안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운영위원회 4월 7일(금) 14시 또는 4월 12일(수) 14시 개최 예정임에 위원장과 간사님 참석을 알리다.
❍ 기후대기과 중소기업 ESG방안 설명회 3월 29일 개최에 따른 위원님들의 참석을 안내하다.
❍ 이학은 위원장이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폐회하다.

□ 회의사진

5. 안건토의
- 제2호 의안. 2023년 협의회 사업방향성 제언

1) 위원 역량강화 교육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위원 역량강화 교육』

□ **개요**

❍ 일　　시 : '23. 4. 20일(목) 13:00

❍ 장　　소 : 이순신국제리더십센터 1층 한산관

❍ 교육장주소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33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8bNmZpzK6M38ZATS8

❍ 주　　제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

❍ 주최 · 주관 : 창원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문　　의 : 055-225-3455(창원시 환경정책과)

<참가신청QR>

□ **일정표**

시간	구분	내용
13:00~13:20	접수/안내	
13:20~13:30	인사말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13:30~15:00	**특강**	**기후위기를 알고 도전하는 기후리더의 역할 ¦ 윤호일 (전,남극세종기지대장/전,극지연구소장)**
15:00~15:20	질의 응답	
15:20~15:30	Break Time	
15:30~16:30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SDGs 이해 ¦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16:30~17:30	**워크숍**	**Let' s SDGs 보드 게임 (SDGs 카드 활용)**
17:30~17:40	마무리	단체 촬영 및 정리

※ 환경을 위해 개인컵(텀블러)을 가지고 오세요.

제11조(총회 등)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4.12.24.]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 · 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4.12.24.>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개정 2014.12.24.>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2.24.> <개정 2016. 12. 28.>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주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주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2020.6.30.>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2. 28.>

2)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인식 확대 교육 및 홍보 : 협의 중(미확정)

참고1. 협의회 2023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년간 추진일정	예산 (천원)
총회 및 운영위원회	· 총회	○2월(1회)	3,500
	· 운영위원회	○1월, 8월(2회)	3,000
	· 워크숍 및 교육, 학술대회 등	○4월~5월,8월~9월(2회)	1,500
위원회활동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1) 교육분과 (SDG 4번) ·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논의(SDG 4번)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9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500
	2) 기업경제분과 (SDG 9번) · 사람중심 미래형 산업성장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업ESG 수요조사 ·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학생·청년 ESG기업 탐방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을 위한 정책 워크숍 · 기업협력 환경실천 정화활동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3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500
	3) 사회여성분과(SDG 5번) · 소외계층의 불평등해소를 위한 공동체적 포용사회 방안 논의 (SDG 10) ·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위한 저출생·고령화 도시 진단 및 도시공 동체 정책 논의(SDG 11) ·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실질적 성평등 달성 제안 논의(SDG 5) · 전국 성평등의제네트워크 협력사업 (SDG17)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9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500
	4) 생태환경분과(SDG 14,15번) · 생태환경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논의 · 창원시 생태환경 시설 탐방 및 보완 정책 논의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4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2,500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한 녹색창원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창원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의 계획수립 및 실천
2.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개정 2016. 12. 28.>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6. 12. 28.>
4. 녹색창원 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개정 2016. 12. 28.>
5. 녹색창원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16. 12. 28.>
6. 그 밖에 녹색창원 2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개정 2016. 12. 28.>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관 부시장,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6. 12. 28., 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기본이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창원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창원시 의제21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

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년간 추진일정	예산 (천원)
	· 하천의 오염원 관리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논의 · 투명유리창 조류충돌 조사 및 보호 활동 · 전국 생물다양성네트워크 협력사업	※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5) 기후에너지분과(SDG 7, 13번) ·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개선(SDG 13번) · 기후위기대응 시민인식 교육 및 홍보캠페인 ·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논의(SDG 7번) · 전국 기후에너지네트워크 협력사업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1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500
	6) 특별위원회(SDG 16,17번) ·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시 정책 논의 · 지속가능한 창원시의 환경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방향성 논의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정책 논의	**○ 위원회별 4회 정도** -1차회의: 3월 20일 -2차회의: 5월 -3차회의: 9월 -4차회의: 11~12월 ※ 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회의** ※ 횟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500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저탄소 실천사업 (SDG13. 기후변화 대응)	· 전국 자전거 출퇴근첼린지 참가 및 캠페이너 활동 추진	**○전국 자전거 출퇴근 첼린지 개최 추진** **-사전 준비회의(3회)** 3.21(화)/대전 4월~7월 **-자전거첼린지** 8월~10월 **-시상식** 9월~10월 **○홍보 캠페이너활동** -6월~11월(상시활동)	11,000
	· 자전거 수리방 확대를 통한 저탄소 실천 활동 확산	**○ 수리방운영 (4회)** -4.22.(토) -6.3.(토) -9월~10월	3,500
	·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시민참여단 활동 :교육, 식물 모종 배부 및 컨설팅	**○ 모종배부4~5월(2회)** - 사전 홍보 및 시민참여단 신청자 모집 : 4.15~30	8,000

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년간 추진일정	예산 (천원)
		-모종 구입 5.3 -모종 배부 5.3~4(2일) ○ 컨설팅 추진(10회) -컨설팅 강사교육~5.30 -컨설팅 신청~6.20 -컨설팅 추진(10회) 7월~8월 ○ 학교교육4~10월(10회) -신청학교 간담회(2회) 4~5월 -강사단회의(3회)3~5월 -교육프로그램 회의:4월 -학교교육 진행(10회) :4월~10월 -자동관수 시설 및 녹색커튼 시설물 설치 : 4월~5월 -중간점검회의: 7월 -평가회의:11월(2회)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RE100시민클럽, 전국네트워크 활동	○에너지의날 행사지원(8.22) -시민토론회 ○전국네트워크 실천활동참여 (7~9월)	2,500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 창원 (SDG4. 양질의 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 (C-ESD)	○ 교육 진행 -대상 :82회 (2,251명) ○ 추진일정: 3.31, 4.7, 4.14, 4.25, 4.26, 4.27, 5.10, 5.25, 6.7, 6.27. 7.3, 7.10, 7.11, 11.6, 11.15, 11.17, 11.24	5,000
	·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 강사역량강화(2회) -1차 워크숍 2.27 -2차 워크숍 11월	2,000
	· SDGs이해하고 실천하기-퀴즈 골든벨	○ 골든벨 추진회의 -8~9월 SDG문제 및 추진논의 (2회) -9월~10월 온라인퀴즈골든벨추진 -11월 평가회의 및 정리	3,000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2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① ----------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 ---. ② ---------- 보고해야 -------.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사업의 평가) ① ---------- 회계연도----------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2.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창원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생 략)	제23조(경비의 지원) ----------. 1.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년간 추진일정	예산 (천원)
	· ESD선진사례 견학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 견학(1회) -9~10월 통영RCE 사례 ○교육네트워크구축지원(2회) -3~6월 2회 간담회	2,400
	· 시민교육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전준비 및 진행 -강사발굴 및 교육(2회) 5~6월 -프로그램 개발 회의(5회) 7~9월 -교구개발 회의(5회) 9월 -진행(10회) 10월~11월	5,000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SDG15. 육상생태계 보전)	· 우리동네 시민생물조사단 모집 및 교육 확대	○모집 및 공고~3.31 ○사전교육 4.20 ○활동지원 4월~11월	10,250
	·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 탐사	○모집 및 공고~4.20 ○사전교육 5.19 ○활동지원 5월~6월 ○설문조사 7월 ○소통의 장 7월 ○보고서 9월	
	· 반딧불이 원정대 교육 및 워크숍, 시민체험교육 · 서식처 보전 정화활동	○사전조사 8.16~9.20 ○시민체험교육 신청 모집 8.22~9.8 ○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9.15~9.1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활성화 (SD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활성화 - 재활용·새활용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식 확산을 마켓 협력 지원 -우산수리 및 장난감수리 등 생활 속 중고물품 수리 운영 지원	○사전홍보:3월 ○준비회의:3월,7월,10월 ○판매 모집:3.6~15 ○창원길마켓:3.18~11.18 ○마산길마켓:4.22,10.28 ○진해길마켓:7.8,11.11 ○평가회의:11월	6,750
거버넌스 민간단체 협력 교류사업 (SDG16.17.평화·정의·포용, 협력)	· 다양한 환경관련 및 지역, 전국 연대활동 참여 및 협력 · 유관기관 및 기업, 단체등 네트워크 추진 및 연대 활동	○ 전국대회 및 네트워크 회의 (10회) 2월~11월 ○ 환경단체 및 연대활동 지원 3월~10월	7,500
합계			89,900

참고2. 협의회 2월~3월 추진 활동보고

사업명	내 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사업	**진해길마켓 개최 준비 점검 회의** ❍ 일정 및 장소 : 23. 2. 3(금) 09:00 / 진해생활협동조합 ❍ 참석 : 진해길마켓 네트워크(이덕자 위원장, 여성의전화, 마을학교, 지속협) ❍ 내용 : 개최 일정 및 장소 협의, 개선방안 논의 - 7월과 11월 2째주에 개최, 장소는 진해구청과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함 ❍ 일정 및 장소 : 23. 2. 17(금) 10:00 / 진해해양경찰서 인근 공원 ❍ 참석 :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김용길팀장, 이덕자위원장, 지속협 2명 ❍ 개최 일정 및 장소 협의, 개선방안 논의 - 진해경찰서 옆 공원 사용 여부 확인 필요(진해구청) **마산길마켓 개최 준비 점검 회의** ❍ 일정 및 장소 : 23. 2. 8(수) / 합성동 ❍ 마산길마켓 개최 여부 논의 - 마산 길마켓네트워크 해체하기로 함. - 마산은 2023년은 개최불가함을 공유하고 회원구청에 전달하기로 함. ▶ 회원구청의 요청으로 4/22, 10/28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함. **창원길마켓 개최 준비 점검 회의** ❍ 일정 및 장소 : 23. 2. 23(목) 19:00 / 해맑음 ❍ 참석 : 창원길마켓 네트워크(안명선 위원장 외 4명, 지속협) ❍ 내용 : 개최 일정 및 장소 협의, 행사 진행 업무분장, 홍보방안 등 논의 **함께하는 시민장터 창원 길마켓 개최 준비** ❍ 참가자 접수: 3/6(월)~3/15(수) 온라인 접수 신청(길마켓 홈페이지) ❍ 개최일시 및 장소: **3/18(토) 11:00~15:00 / 성산아트홀 앞 가로수길** ❍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직거래, 고장난 우산 수리, 먹거리 장터 등 재활용·새활용 시민문화 확산 캠페인 **함께하는 시민장터 창원 길마켓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3/18(토) 11:00~15:00 / 성산아트홀 앞 가로수길** ❍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직거래, 고장난 우산 수리, 먹거리 장터 등 재활용·새활용 시민문화 확산 캠페인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20명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생 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 또는 각 위원회----------.

분야의 전문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생 략)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주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주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② ---------- 시민, 학계, 기업, ---------- 시민민, 학계, 기업의 ----------.
제11조(총회 등) ①·② (생 략)	제11조(총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 1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 공동의장, 각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사업명	내 용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사업	**양서 파충류 서식처 보전 풀베기 협력사업** ❍ 일시 및 장소: 23. 2. 15(수) 10:00~13:00 람사르생태공원 인공습지 ❍ 참석 : 현대로템(주) 5명, 지속협 생태강사 2명, 자연보호협의회 1명 ❍ 내용 : 양서 파충류의 산란시기에 양서류 특히 두꺼비의 성체 이동에 따른 산란을 위한 습지 내 식물을 제거함. **연안환경활동가 교육 및 보전활동** **1. 교육 장소 사전 점검 및 논의** ❍ 일시 및 장소: 23. 2. 21(화) 14:00~16:00 진해만, 진해교육장 ❍ 참석 : 수산과, 진해연안환경활동가, 지속협 ❍ 내용 : 신이천과 진해만 중심 연안환경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및 장소 논의 **2. 연안환경활동가 진해만 모니터링 추진** ❍ 일시 및 장소: 23. 1. 11(수) 10:00~12:00 진해만 ❍ 참석 : 진해연안환경활동가 7명 ❍ 내용 : 조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 기록, 오염원 정화활동 ❍ 일시 및 장소: 23. 1. 18(수) 10:00~12:00 진해만 ❍ 참석 : 진해연안환경활동가 5명 ❍ 내용 : 조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 기록, 오염원 정화활동 ❍ 일시 및 장소: 23. 2. 15(수) 09:30~12:00 진해만 ❍ 참석 : 진해연안환경활동가 7명 ❍ 내용 : 조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 기록, 오염원 정화활동 ❍ 일시 및 장소: 23. 2. 28(화) 10:00~12:00 진해만 ❍ 참석 : 진해연안환경활동가 8명 ❍ 내용 : 조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 기록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 민관산학 협력 실무협의회 제1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3/7(화) 15:30~18:00 / 창원시자연학습장 ❍ 대 상: 13개 협력기관(창원시, 지속협, 창원대학교LINC3.0, 창원YMCA,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양서류네트워크, BNK경남은행, 해성디에스, 무학, 현대위아,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덴소코리아) ❍ 내 용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논의

사업명	내 용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협력사업-시민생물조사단 모집 ○ 모집일정: 23.3.20(월)~3.31(목) ○ 내용 :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활동 독려 **연안환경활동가 교육 및 모니터링** ○ 일시 및 장소: 3/17(금) 10:00~12:00 / 진해만 일원 ○ 참 석: 진해 연안환경활동가 20여명 ○ 내 용: 진해만 저서생물 및 조류 모니터링
총회 및 운영회의	**정기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3. 2. 16(목) 14:00 / 시민홀 ○ 참석 : 제7기 위원 65명 등 관련 실무자 ○ 내용 : - 2022년 사업심의 및 결산심의 - 임원선출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공동의장단 회의** ○ 일정 및 장소: 3/17(금) 12:00, 쉐보레마산대리점 ○ 참 석: 공동의장단 3명(이학은, 안병석, 전영호),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 내 용: 2023년 사업방향성 논의 및 사무국 대체인력 논의 등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일정: 23.3.20(월) 16:00 ○장소: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참석: 10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제1차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23.3.21(화) 16:00 ○장소: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참석: 15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제1차 기업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23.3.23(목) 16:00 ○장소: 창원대학교 82호관 206호 ○참석: 15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제1차 생태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23.3.24(금) 16:00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연대사업
	6. 그 밖에 녹색창원 2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6.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신 설>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소관 부시장,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이내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2. ----------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삭 제>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창원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의 계획수립 및 실천 2.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녹색창원 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5. 녹색창원21과 관련된 국내·외	제6조(기능)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3. ---------- 평가·자문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

사업명	내 용
	○장소: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참석: 15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제1차 사회여서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23.3.29(수) 14:00 ○장소: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회의실2 ○참석: 15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제1차 교육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23.3.29(수) 16:00 ○장소: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회의실2 ○참석: 15명 ○주요안건: 23년 사업계획 논의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 창원 (C-ESD)	**C-ESD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3. 2. 27(월) 13:00~15:00 / 창원시자연학습장 ❍ 참석 : C-ESD 양성강사 및 경남대학교 이진희 교수, 지속협 ❍ 내용 : 2023년 학교수업 준비 내용 전달 및 강사 역량강화 교육 **창원시지속가능발전교육(C-ESD) 1차 수업 진행** ○일정: 23.3.31(금) 13:00 ○장소: 마산중학교 1학년 1~2반 ○참석: 60명 ○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창원만들기	**도시온도 낮추기 실천 활동-녹색커튼 씨앗 심기 협의** ❍ 일시 및 장소: 3/10(금) 창원시자연학습장 ❍ 참 석: 자연보호협의회 창원지회, 지속협 ❍ 내 용: 녹색커튼 시민실천단 모종배부를 위한 씨앗 구입 및 심는 일정 협의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방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3/10(금) 10시 ❍ 참 석: 자전거 수리방 강사, 지속협 ❍ 내 용: 2023년 연간 추진일정 논의 **녹색커튼 강사단 회의** ❍ 일 시: 3월 16일(목) 14시 ❍ 참 석: 녹색커튼 강사단, 윤재영 간사 ❍ 내 용: 감천초, 회원초 찾아가는 녹색커튼 수업 논의

사업명	내 용
	전국 자전거출퇴근챌린지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3/21(화) 10:00, 대전 ❍ 참 석: 전국 지속협 생태교통네트워크, 성지수 팀장 ❍ 내 용: 2023년 전국 자전거출퇴근챌린지 기획 논의
협력 및 교류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문화환경분과회의 참가** ❍ 일시 및 장소: 23. 2. 9(목), 중앙평생학습센터 ❍ 내용: 2023년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 확정 **회원2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교육 지원** ❍ 일시 및 장소: 23. 2. 14(화), 회원2동주민센터 2층 ❍ 내용: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실천사업 **창원시 마산가족센터 환경교육 지원** ❍ 일시 및 장소: 23. 2. 18(토), 마산가족센터 ❍ 내용: 일상생활 속 환경실천 **그린엑스포 추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3. 2. 21(화), 경남신문 ❍ 내용: 3월부터 온라인 추진 홍보 및 6월 3일 오프라인 행사 논의 **창원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준비회의 지원** ❍ 일시 및 장소: **3/15(수) 16:00, 창원시자연학습장** ❍ 참 석: 관내 환경교육단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속협 ❍ 내 용: 창원시 환경교육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 등

1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신 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 설>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한 녹색창원21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기본이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창원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창원시 의제2	제3조(정의) ----------.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참고3 협의회 4월~12월 추진 활동계획안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4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4.7.(금)13:00 •장 소 :마산중학교 1학년3~4반 •참여인원 :6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일 자 :2023.4.12.(수)14:00 •장 소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참여인원 :20명 •내 용 :운영위원장 호선 및 사업 방향성 제언, 협의회 운영규정 수정 등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4.14.(금)08:00 •장 소 :동진중학교 1학년1~7반 •참여인원 :210명 •내 용: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4.15.(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학교 교육	•일 자 :2023.4.19.(수) 09:00 •장 소 :감천초등학교 •참여인원 :80여명 •내 용 :식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지속가능발전 위원 역량강화 교육	•일 자 :2023.4.20.(목) 13:00 •장 소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참여인원 :150여명 •내 용 :기후위기시대 리더의 역학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4.22.(토)13:00~17:00 •장 소 :NC야구장 가족공원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방	•일 자 :2023.4.22.(토)13:00~17:00 •장 소 :NC야구장 가족공원 •참여인원 :50여명 •내 용 : -기본점검 (핸들/브레이크패드, 올바른 기어사용법, 안장조정등) -타이어 공기주입, 공기밸브(무시고무)제공 -브레이크 줄 교체 및 튜닝 -안전장비(후미등, 벨) 지급
	창원시 시민생물조사단 강사단 워크숍	•일 자 :2023.4.24.(월)13:00~17:00 •장 소 :창원천 •참여인원 :15여명 •내 용 :창원천/남천 어류생태전문가 교육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4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4.25.(화)08:00 •장 소 :대산중학교 1학년1~2반 •장 소 :창원여중학교 1학년4~6반 •참여인원 :10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일 자 :2023.4.26.(수)08:00 •장 소 :창원여중학교 1학년7~8반 •참여인원 :60명
		•일 자 :2023.4.27.(목)08:00 •장 소 :구산중학교 1학년1~6반 •장 소 :창원여중학교 1학년1~3반 •참여인원 :270명
‘23. 5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5.2.(화)15:00 •장 소 :명곡고등학교 1학년 •참여인원 :9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녹색커튼 모종 배부 및 시민실천단 교육	•일 자 :2023.5.3.(수)09:30~16:00 •장 소 :창원시자연학습장 •참여인원 :200명(1,500주) •내 용 :도시온도 낮추기 중요성 및 식물 역할교육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5.4.(목)15:00 •장 소 :명곡고등학교 1학년 •참여인원 :9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13개 민관산학 협력기관 14차 실무협의회	•일 자 :2023.5.9.(화)15:30 •장 소 :창원시자연학습장 •참여인원 :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5.10.(수)08:00 •장 소 :합포여중학교1학년~3학년(4학급) •참여인원 :1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5.20.(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문화공연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등
	창원시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일 자 :2023.5.20.(토)~6.6(화) •장 소 :온라인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창원시 생물탐사 및 홍보캠페인 시민참여형 실천활동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5.25.(목)08:00 •장 소 :마산중앙중학교 3학년 1반~6반 •참여인원 :18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제21조제1항 중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을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이내

제8조제2항 중 “주민, 학계, 기업,”을 “시민, 학계, 기업,”으로, “주민, 학계, 기업의”를 “시민, 학계, 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을 “공동의장, 각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회의는”을 “특별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또는 각 위원회”로 한다.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6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방	•일 자 :2023.6.3.(토)11:00~17:00 •장 소 :용지문화공원 •참여인원 :100여명 •내 용 : -기본점검(핸들, 브레이크패드, 올바른 기어사용법, 안장 조정 등) -타이어 공기 주입, 공기밸브(무시고무) 제공 -브레이크 줄 교체 및 튜닝 -안전장비(후미등, 벨) 지급
	전국자전거출퇴근 챌린지	•일 자 :2023.6.5.(월)~6.30(금) •장 소 :전국15개도시 동시 온라인 앱 •참여인원 :400명 •내 용 :탄소중립,미세먼지저감 실천활동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6.7.(수)09:00 •장 소 :합포중학교 1학년 1반~4반 •참여인원 :1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6.17.(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6.27.(화)08:00 •장 소 :웅천중학교 1학년 1반~5반 •참여인원 :15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학교 교육	•일 자 :2023. 6.21.(수) 09:00 •장 소 :감천초등학교 •참여인원 :80여명 •내 용 :식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23. 7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7.3.(월)09:00 •장 소 :내서중학교 1학년 1~2반 •참여인원 :6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7.8.(토)11:00~15:00 •장 소 :진해속천 해양경찰서옆 공원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13개 민관산학 협력기관 15차 실무협의회	•일 자 :2023.7.11.(화)15:30 •장 소 :창원시자연학습장 •참여인원 :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7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7.10.(월)14:00 •장 소 :호계중학교 3학년1반~5반 •참여인원 :15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7.11.(월)14:00 •장 소 :호계중학교 3학년6반~9반 •참여인원 :1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학교 교육	•일 자 :2023. 7.19(수)09:00 •장 소 :감천초등학교 •참여인원 :80여명 •내 용 :식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23. 8	23년 제3차 운영위원회	•일 자 :2023. •장 소 : •참여인원 :20명 •내 용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에너지의 날 행사	•일 자 :2023. 8.22(화) •장 소 : •참여인원 :200명 •내 용 :RE100시민클럽 실천 행동 서약
	SDGs이해하고 실천하기 -퀴즈골든벨	•일 자 :2023. 8.1~8.20 •장 소 :온라인 •참여인원 :200명 •내 용 :SDGs관련 퀴즈
	ESD선진사례 견학	•일 자 :2023. 8. •장 소 :통영RCE센터 •참여인원 :20명 •내 용 :RCE센터 교육 프로그램 사례 견학 및 교육 개발 견학
	반딧불이 원정대 조사활동	•일 자 :2023. 8.~9월 •장 소 :내동천 •참여인원 :200명 •내 용 :반딧불이 사전 조사 및 체험교육
	반딧불이 원정대 가족체험교육	•일 자 :2023. 9월 8일(금)~9일(토) •장 소 :내동천 •참여인원 :200명 •내 용 :반딧불이 시민체험교육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ㆍ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평가ㆍ자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녹색창원21과 관련된”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으로, “연구”를 “연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를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9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학교 교육	•일 자 :2023.9.13.(수) 09:00 •장 소 :감천초등학교 •참여인원 :80여명 •내 용 :식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일 자 :2023.9.13.(수)~9.15(금)(3일) •장 소 :순천시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 학술대회 및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9.16.(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13개 민관산학 협력기관 16차 실무협의회	•일 자 :2023.9.12.(화)15:30 •장 소 :창원시자연학습장 •참여인원 :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23. 1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10.21.(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4.22.(토)13:00~17:00 •장 소 :NC야구장 가족공원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도시온도 낮추기 녹색커튼 학교 교육	•일 자 :2023.10.18.(수) 09:00 •장 소 :감천초등학교 •참여인원 :80여명 •내 용 :식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이해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월	세 부 사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23. 11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11.6.(월)09:00 •장 소 :경원중학교 3학년1반~4반 •참여인원 :1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11.11.(토)11:00~15:00 •장 소 :진해속천 해양경찰서옆 공원 •참여인원 :5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11.15.(수)09:00 •장 소 :명서중학교 1학년1반~5반 •참여인원 :15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11.17.(금)09:00 •장 소 :성지여자중학교 1학년1반~6반 •참여인원 :18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선순환 길마켓	•일 자 :2023.11.18.(토)11:00~15:00 •장 소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참여인원 :800여명 •내 용 :중고물품 및 수공예품 판매, 어린이마켓, 사회적 경제마켓, 문화공연 등
	청소년 지속가능발전교육(C-ESD)	•일 자 :2023.11.24.(금)09:00 •장 소 :삼진중학교 3학년1반~4반 •참여인원 :120명 •내 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및 실천
‘23. 12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 민관산학 협력활동 보고회	•일 자 :2023.12.12.(화)15:00 •장 소 :CECO 700호 •참여인원 :100명 •내 용 :23년 생물탐사결과 보고 및 활동 공유, 평가 및 간담회

마. 협의회의 공동의장중에서 운영위원장을 호선하고,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4조)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 분과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 → 20명 이내 구성으로 변경

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1조)

-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한 2명의 감사 →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으로 변경

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24조 및 안 제26조)

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6. 기타토의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중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김혜란 의원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6조)

라. 정기회의를 연 2회 → 연 1회 개최로 변경함(안 제11조)

5. 안건토의
- 제3호 의안.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 주요 개정 내용

<table>
<tr><th>(현) 운영규정</th><th>운영규정 (개정안)</th></tr>
<tr><td>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조례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1월에 개최한다.</td><td>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조례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td></tr>
<tr><td>제13조 (위원회 회의)
1.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td><td>제13조 (위원회 회의)
1.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일)</td></tr>
<tr><td>4. 전문직은 별도의 직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9. 3. 28.)
<table>
<tr><th>직 제</th><th colspan="2">전문직 채용 및 조직확대 시 적용</th></tr>
<tr><td>사무국장</td><td colspan="2">사무총장, 사무처장</td></tr>
<tr><td>실장</td><td>국장</td><td>실장</td></tr>
<tr><td>팀장</td><td>팀장</td><td>팀장
책임연구원</td></tr>
<tr><td>간사</td><td>간사</td><td>연구원</td></tr>
</table></td><td>
<table>
<tr><th>직 제</th><th colspan="2">전문직 채용 및 조직확대 시 적용</th></tr>
<tr><td>사무국장</td><td colspan="2">사무총장, 사무처장</td></tr>
<tr><td>실장: 삭제</td><td>국장</td><td>실장</td></tr>
<tr><td>팀장</td><td>팀장</td><td>팀장
책임연구원</td></tr>
<tr><td>간사</td><td>간사</td><td>연구원</td></tr>
</table></td></tr>
<tr><td>제17조 (사무국장 임용 방법 및 절차)
1. 사무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td><td>제17조 (사무국장 임용 방법 및 절차)
1. 사무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td></tr>
</table>

공채 공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공동의장의 인준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공채 공고 후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참조 :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3항.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장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38조 (보수)** 1.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별표4>
제15장 창원시와의 협조 **제43조 (회장)** 협의회 회장은 공동의장 중 1인을 회장으로 정하여 창원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사무국장)** 협의회의 사무국장을 채용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원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장 삭제 제43조 삭제 (총회에서 협의회 회장 및 공동의장이 선출되므로 불필요 조항.) 제44조 삭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6장 보 칙 **제45조 (서식)**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장, 운영위원의 위촉장, 의결 위임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단 의결 위임의 경우 위임표시(이메일, 문자 메시지 답변 등 이에 준하는 증명이 가능한 수단 포함)한 내용도 위임서식으로 본다.	**제16장 보 칙** **제45조 (서식)**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장, ~~운영위원의 위촉장(삭제)~~, 의결 위임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단 의결 위임의 경우 위임표시(이메일, 문자 메시지 답변 등 이에 준하는 증명이 가능한 수단 포함)한 내용도 위임서식으로 본다.

제44조 (사무국장) 협의회의 사무국장을 채용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원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6장 보 칙 **제45조 (서식)**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장, 운영위원의 위촉장, 의결 위임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단 의결 위임의 경우 위임표시(이메일, 문자 메시지 답변 등 이에 준하는 증명이 가능한 수단 포함)한 내용도 위임서식으로 본다. **제46조 (회의의 공개)**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47조 (위임)**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장 보 칙** **제45조 (서식)**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장, ~~운영위원의 위촉장(삭제)~~, 의결 위임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단 의결 위임의 경우 위임표시(이메일, 문자 메시지 답변 등 이에 준하는 증명이 가능한 수단 포함)한 내용도 위임서식으로 본다.

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교육훈련, 연수 등에 따른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동의장이 정하는 복리후생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여비규정 **제40조 (여비지급)** 사무국 직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요할 때에는 출장비를 지급하며 창원시 공무원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14장 물품규정 **제41조 (물품의 범위)** 1. 내용 년수가 1년 이상(독립적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물품으로 관리한다. 2. 제 1호와 관계없이 업무상 중요한 물품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용, 전시용 등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42조 (관리)** 1.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품증감 현황을 명백히 정리한다. 2. (폐기) 창원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5장 창원시와의 협조 **제43조 (회장)** 협의회 회장은 공동의장 중 1인을 회장으로 정하여 창원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장 삭제 제43조 삭제 (총회에서 협의회 회장 및 공동의장이 선출되므로 불필요 조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019. 3. 28. 일부개정

2023. . . 일부개정

(현) 운영규정	운영규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조례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1월에 개최한다.	**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조례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1. 의안은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위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임 및 사임) 1. (해임) 운영위원으로서 조례 또는 규정 위반, 과실 또는 사고로 본 협의회에 재산상, 명예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밖에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사임) 운영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임된다. 3. (보선) 운영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이 때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업무진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에게 공람하고 최종본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체 위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제8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업무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	

가한다) 2. 병가(질병,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병가를 부여한다) 3. (특별휴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4. (출산휴가) 사무국 직원이 출산을 위하여 휴가를 원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5. (연가) 근무년수에 따라 연가를 부여한다. <별표3> 6. 그 밖에 사무국 직원의 장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장이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38조 (보수)** 1.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2. 전 직원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한다. **제39조 (복리후생)** 1. 복리후생관리 :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복리후생비의 종류 ① 급식비-예산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무국 직원의 정액급식비를 정하도록 하며, 또한 시간외 근무의 식비 전액을 지급한다. ② 교육훈련비-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	**제38조 (보수)** 1.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별표4>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당해연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것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갖추어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다. 4. 지출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 (선금과 개산금)** 지출원은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근무시간 **제35조 (직원의 근무시간)** 창원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장 휴가 **제36조 (휴일 근무)**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같은 시간의 휴무를 실시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가(법령, 국가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집이나 참가 시,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로 허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운영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0조 (위원회 역할)**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설치한 각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1.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해당 분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단체나 위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 각 위원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사무국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타당성를 검토하여 각 위원회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야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각 위원장 선출과 역할)** 1.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각 위원장은 의제별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위원장 유고시 해당 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1.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회 간사)** 1. 각 위원회별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각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 등을 담당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1.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일)
제5장 사무국 **제15조 (직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위원회간의 업무협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사무국 직제규정) 1. 사무국장 - 사무국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원 - 팀장, 간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의	

제29조 (직원의 복무)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동의장은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월 이상 복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제9장 회계관리 **제30조 (예산편성)** 사무국은 창원시의 회계년도를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중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집행 및 보고)** 창원시로 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해당조례에 따라 집행 및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액에 대한 전체 예산집행 결과는 월별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장은 매년 총회에 집행내역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출의 원칙)** 1.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2. 지출순위는 채무발생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2.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당해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재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업무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25조 (전결자의 부재) 전결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제27조 (효력) 전결된 문서는 운영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품위유지 및 공사의 구분)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3. 직무대행 - 사무국장 유고시 차순의 직책을 맡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문직은 별도의 직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9. 3. 28.)

직 제	전문직 채용 및 조직확대 시 적용	
사무국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실장	국장	실장
팀장	팀장	팀장 책임연구원
간사	간사	연구원

직 제	전문직 채용 및 조직확대 시 적용	
사무국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실장: 삭제	국장	실장
팀장	팀장	팀장 책임연구원
간사	간사	연구원

제17조 (사무국장 임용 방법 및 절차)
1. 사무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채 공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공동의장의 인준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장의 인준을 받아 연임이 가능하다.
3. 사무국은 기존 사무국장의 임기 만료 전 30일까지 신임사무국장 공채공고를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10일간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사무국장 임용 방법 및 절차)
1. 사무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채 공고 후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참조 :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3항.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사무국 직원의 인사규정)
1. 직원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직·전문직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직은 사무국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전문직은 협의회 채용

계약에 있어 일정기간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3. 직원의 신규임용 방법은 공채 및 특별전형으로 한다. 4. 직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채 공고 후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특별전형으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6. 사무국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 전문직은 해당업무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7.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 퇴직하며, 채용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8. 협의회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이 곤란한 경우 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9. 직원은 사무국장의 승인 없이 타 기관의 보직을 겸할 수 없다.	
10. 사무국 직원은 특별히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후 즉시 징계결과보고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직원의 직제와 업무분장은 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이 정한다.	10. 사무국 직원은 특별히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후 즉시 징계결과보고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문서 및 보안 **제19조 (문서 정의)** 문서라 함은 회장 명의로 대외로 공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협의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20조 (결재)** 문서 기안문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발송)** 문서의 발송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국에 비치된 문서의 등록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등록대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문서등록번호를 붙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 (문서 보안)** 문서 및 전화 등의 보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문서의 보존년한)** 협의회의 문서 보존 연한은 창원시의 기준에 따른다. 1. 5년 보존 : 예산, 결산 및 회계관계문서, 지방의제 추진관련 2. 3년 보존 :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사업계획서 3. 1년 보존 : 기타 참고자료	
제7장 위임전결 규정 **제24조 (전결사항)** 1.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